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34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이성운
김원이·박수현·윤준병
박지원·이개호·김영진
김영배·전종덕·조인철
서미화·문금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요건을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정착을 위한 한시적 특례와 홍보 확대 등의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범제화하되, 연령조건을 만 85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 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10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5세”를 “85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
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 ----- ----- ----- ----- ----- ----- ----- -----.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u>10년</u>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u>1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 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1. ----- ----- ----- ----- <u>5년</u> ----- ----- ----- ----- <u>5년</u> ----- ----- ----- -----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2. -----

이상 만 <u>75세</u> 미만일 것 3. · 4. (생 략)	----- <u>85세</u> ----- 3. · 4. (현행과 같음)
--	--